

# 수입원

## 팩트 시트

# DFEH



**“좋았어, 섹션 8!” 임대 보조 및 주택 바우처가 이제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주 및 주택 공급자는 임대 보조 또는 바우처를 받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sup>1</sup>**

수입원을 포함해 보호 제도에 근거하여 주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불만 제기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ca.gov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

<sup>1</sup> 여기에는 임대 보조, 임대 보증금 보조, 주택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모든 연방, 주, 지역 주택 혜택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모든 종류의 재정적 원조가 포함됩니다. 주택 보조금 추가 양식에는 VASH, 노숙 방지 및 빠른 재주거 프로그램(Homelessness Prevention and Rapid Re-Housing Program), AIDS 환자의 주거 기회(Housing Opportunities with AIDS, HOPWA), 임대 보증금 보조 프로그램(Security Deposit Assistance Programs)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6가지 알아야 할 사항

1. 임대주 및 주택 공급자는 특정 수입원의 세입자에 대한 선호 여부를 광고하거나 명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섹션 8 비적용. 바우처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는 대기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2. 임대주 및 주택 공급자는 섹션 8 바우처 또는 기타 주택 보조금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더 큰 금액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임차인을 다르게 대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주는 임차인이 공공 또는 주택 보조 양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집(아파트 또는 거주지)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4. 임대주 및 주택 공급자는 임차인이 주거 지원 (Section 8 housing) 바우처 또는 기타 주택 보조금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파트에 섹션 8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방을 빼 주시죠.”
5. 임대주 및 주택 공급자는 임차인이 섹션 8 바우처 또는 기타 주택 보조금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임차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6. 임차인이 임대료 보조 또는 섹션 8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 공급자는 임차 시 임대료에서 임차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 또는 주택 공급자가 임차인이 지불하는 부분의 임대료만을 근거로 하지 않은 재정 또는 소득 기준을 이용한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은 차별적인 주거 행위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소득원을 근거로 한 괴롭힘, 차별, 위협적 행위 또는 언사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다른 세입자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